

인권법관련 공청회 토론자료

국회의원 이 신 범(한나라당 .서울강서을)

■ 한나라당의 입장

1. 법안 명칭

- 인권위원회 법이 타당하다. 왜냐하면 이 법의 필요성은 정권이 저지른 인권침해의 최종적 규제와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자율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.

2. 위원회 명칭

- 국민인권위원회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어느 것도 무방하지만 법무부안이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인 법무부의 보호하에 있는 국민의 인권을 신장한다는 뜻에서 국민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인 만큼, 제1항과 마찬가지로 이 기구에 독자성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시민단체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되었으면 한다.

3. 위원회의 위상

- 법무부는 인권기구의 위상을 '특수법인'(수정안 제14조 2항)으로 하였다가 최종안에서는 '법인'으로 하고 있다.

- 이는 인권기구의 성격 규정을 회피하여 법적 성격을 약화시키고 인권기구를 법무부의 보조장치화, 산하단체화 하려는 의도가 강하다.

- 또한 법무부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되었고, 권한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.

- 인권단체와 민간 전문가들의 적절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.

- 인권기구의 독립성과 법적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 기구의 위상은 특별법에 의한 국가기구로 하여야 하며, 헌법을 개정하는 기회가 있으면 중앙선관위처럼 헌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.

- 또 시민단체들도 국가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.

4. 인권위원 임명방식

- 법무부는 인권위원을 국회의장, 대법원장, 국무총리가 각각 3인씩 추천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.

-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진 인물을 선임하기 힘들며, 위원 선임의 편향성이 크게 우려된다.

- 따라서 국회의장과 대법원장, 그리고 편향적 시각이 배제된 변호사 단체가 회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도록 한다.

- 또 국회에서 청문절차를 거쳐 공정성, 청렴성등의 자격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한다.

5. 예산

- 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 부서의 독립이 필요한 만큼 예산 편성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.

6. 조직

- 사무총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.

7. 조사 대상

- 법무부가 제시한 인권기구의 조사대상은 불과 8개의 불법행위 유형으로 한정했다.

- 즉, 수사기관 등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, 그리고 수사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의 인권침해 행위 등이다.

- 1997년 인권전문가들이 채택한 Maastricht 지침 25조에서는 정치.경제.사회.문화 등 모든 분야의 인권침해도 조사해야 한다고 한바 있다.

- 만약 법무부안을 따른다면, 노점상 단속, 무차별 불심검문,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거부, 구금시설에 대한 의료지원 거부, 경찰의 철거폭력 방조 등 불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각종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질 수 없다.

-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제시한 8개 유형에 대한 조사는 현행법상 명백한 범죄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것들이다..

- 이는 또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를 없다.

- 따라서 조사대상은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인권문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8. 조사불응시 제재방안

- 정권이 저지를 범죄라든지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있어서 조사방안을 확보한다든지 조사불응 시 제재방안이 강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도 동감한 바 있다.

- 그런데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점과 국가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쟁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점, 인권위원회가 많은 시민으로부터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되고 인권위원회의 권한이 주로 권고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.

- 따라서 민간인의 경우에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여도 과태료에 그치는 점과 비교하여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- 그러나 인권위원회가 구제하는 인권의 침해가 정권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침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경우에는 ① 3회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하는 경우, ② 관련자료를 인멸 또는 은닉한 경우, ③ 위원회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의 규정을 두기로 하였다.

- 이 벌칙규정에 해당되는 경우, 위원회는 관할 검찰청에 당연히 고발하는 것으로 하고 검찰의 불기소의 경우에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.

9. 결정의 효력

- 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으로는 단계별로 다섯가지를 규정한다.

- 그것은 ① 시정권고, ② 구제명령, ③ 법률구조, ④ 고발 및 수사의뢰, 불기소시 재정신청권, ⑤ 법률제도 등의 개선 권고 등이다.

Amnesty International이
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

< 1차서한 > - 1998. 10. 23.

- 정부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법안을 만들고 적절한 국민적 협의과정도 생략한 채 법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실에 우려.
- 법무부의 법안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함.
 - 충분한 독립성과 조사권을 갖추지 못함.
 -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.
 - 인권기구의 관할사항도 제한적임.
- 임명 역시도 정부의 통제를 받을 것임.

< 2차서한 > - 1998. 12. 4.

- 구성과 관할사항, 권한은 국제인권기준에 완전히 부합되어야 함.
- 국가인권위원회가 관할사항이 협소하고 독립성과 조사권이 미약함.
- 권고사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음.
- 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한 공개적 논의의 장이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음.